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김정호 · 한민수
송옥주 · 김문수 · 박희승
남인순 · 전진숙 · 박홍배
백혜련 · 서미화 · 민병덕
박홍근 · 김 윤 · 박선원
문진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·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. 특히 초저출생·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.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.

그런데,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,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및 생애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

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돌봄기본법안」(의안번호 제138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요지와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돌봄기본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(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에 관한 심사) ① ~ ② (생 략)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 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 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 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 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 다. <후단 신설>	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(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에 관한 심사) ① ~ ② (현행 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</u> <u>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요</u> <u>지와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</u> <u>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</u> <u>여야 한다.</u>